

研究論文

朝鮮後期 英祖初盤 法制整備의 성격과 그 지향*

－ 『新補受教輯錄』 體裁를 중심으로 －

김 백 철**

- I. 머리말
- II. 국가조직의 재편
- III. 사회변동의 대응
- IV. 백성의 부각
- V.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I. 머리말

조선후기 법제정비사업은 숙종대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6세기 『大典後續錄』이 편찬된 이래 後王의 受教를 법체계 내에 편입시키는 일은 여의치 않았다. 전란의 발생과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물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제정비에 힘을 기울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약 1세기이상 논의만 무성했던 수교의 집대성작업은 갑술환국(1694)으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숙종 후반대에 비로소 『수교집록』으로 결실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18세기 법제정비사업의 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이후인 영조년간 『經國大典』 修明 논의가 시작되면서 법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교집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某種의 원고도 만들어졌다. 오늘날 『신보수교집록』으로 알려진 이 원고는 편찬 당시에는 정식으로 간행되지 못하여 정확한 명칭이 부여되지 못하였다. 現傳하는

* 이 논문은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사업단 간사, 조선후기사 전공(sugaine@hanmail.net).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新補受教輯錄』(奎1158) 필사본 2冊, 『新補受教』(奎25263) 필사본 1冊, 『新補受教』(古5125) 필사본 2冊 등이 있다. 이들 판본에는 후대에 첨가된 기록도 일부 보인다. 영조년간에는 국왕이 “나의 수교 [予之受教]”로 지칭한 적이 여러 차례 확인되지만, 『속대전』이 편찬이후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영조년간에는 속종대의 『수교집록』과 『전록통고』를 각기 모범으로 삼아, 『신보수교집록』, 『증보전록통고』 등이 편찬되었다. 이 원고들은 법제정비사업의 최종단계에서 『속대전』이 만들어지면서 모두 중간단계의 원고로만 남고 별도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양자는 정작 조선후기에도 『속대전』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¹⁾ 『증보전록통고』에는 『신보수교집록』의 원고가 일정하게 윤색되어 산입되어있다. 이것이 다시한번 대대적인 體裁변환을 통해서 『속대전』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므로 영조년간 법제정비사업은 『신보수교집록』, 『증보전록통고』, 『속대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편찬단계를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조년간 편찬된 법제서 중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신보수교집록』이며, 이는 영조대 초기 법제정비사업의 성격과 지향점을 잘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²⁾

『신보수교집록』은 1939년 朝鮮總督府 中樞院에서 활자화되면서 일본식 懸吐와 頭註를 붙이면서 내용에 대한 일정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광복 후에도 이 대본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原典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日人の 자료이해방식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된 기존방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199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판본이 직접 영인되었다.³⁾ 이로써 원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다. 한편 광복 후에는 국역사업도 이루어져, 법제

- 1) 『신보수교집록』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발굴하여 알려진 자료이며, 『증보전록통고』는 광복후 법제처가 최초로 역주하여 소개한 자료이다. 1939년 朝鮮總督府 中樞院에서 먼저 이 원고들을 정리하여 활자화하여 널리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광복후 경인문화사 등에서 이를 복간한 판본이 두루 이용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편), 『조선왕조법전집(2)』(경인문화사, 1969); 법제처(편), 『(증보)전록통고: 형전』(법제처, 1969); 법제처(편), 『(증보)전록통고: 이전·호전·공전』(법제처, 1974); 법제처(편), 『(증보)전록통고: 예전·병전』(법제처, 1974).
- 2) 『신보수교집록』의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구덕희·홍순민, 『『신보수교집록』 해제』, 『원문·역주 신보수교집록』(칭년사, 2000), 7~13쪽,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68(2008a), 197~207쪽.
- 3) 서울대 규장각(편), 『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서울대 규장각, 1997).

처에서 1964년 번역이 시도된 바 있다.⁴⁾ 2000년에는 새로이 규장각 소장 원자료를 주요 대본으로 하면서 중추원본과 대조하여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에서 역주가 이루어졌다.⁵⁾ 현재 가장 역주가 충실한 저본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영인 및 번역사업에 비해 정작 자료에 대한 연구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⁶⁾ 『신보수교집록』을 부수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다수 보이지만, 『신보수교집록』 자체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체로 17~18세기 법제편찬의 흐름을 보여주거나 혹은 자료소개의 차원에서 언급되어 본격적인 연구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다수이다.⁷⁾ 그러므로 『신보수교집록』에 관해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신보수교집록』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六典의 포괄범위가 방대하고 受敎 역시 수천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일연구에서는 감당해내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쉽사리 연구를 진척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신보수교집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반적인 體裁를 중심으로 영조초반 법제정비사업의 성격과 그 지향에 대해서 개략적이거나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국가조직의 재편

1. 구성상의 특징

영조초반 爲政者들은 국가체제의 재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체제개혁의 성격보다는 현재의 제도가 상당히 문란해져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초의 정연한 국가체제를 모범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논

4) 법제처(편), 『原新補受敎輯錄·詞訟類聚』(法制處, 1964).

5)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편), 『원문·역주 신보수교집록』(청년사, 2000).

6)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신보수교집록』,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史部1』(서울대 규장각, 1981), 279~280쪽; 구덕희, 「『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해제, 『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서울대 규장각, 1997); 연정열, 「新補受敎輯錄에 관한 一研究, 『論文集』, 24-1(한성대학교, 2000); 구덕희·홍순민, 앞의 논문.

7) 한상권, 「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1994); 홍순민, 「조선후기 법전편찬의 추이와 정치운동의 변동, 『한국문화』, 21(1998); 구덕희, 「법전으로 역사읽기: 집록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 현실』, 46(2002).

으로 전개되었다. 당대 위정자들의 인식은 『경국대전』을 모범으로 삼아서 현재의 법제도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실무적으로 『경국대전』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⁸⁾ 이러한 논의는 이미 숙종대 한 차례 결실을 이루어 『수교집록』(숙종24)과 『전록통고』(숙종33) 등으로 정리된 바 있었으나,⁹⁾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受教들이 누적되면서 이를 또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신보수교집록』은 바로 이러한 법제정비과정에서 산출된 법제서이다.

『신보수교집록』에 실려있는 전체 수교의 연대들을 분류해 보면, 숙종대(47%), 경종대(3%), 영조대(29%) 등의 수교만으로도 약79%에 달한다.¹⁰⁾ 이는 숙종 후반~영조 초반 새로이 만들어진 수교를 모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교의 연대 분포적인 특징은 당대에 주로 사용하던 현행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수교집록』의 찬집원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¹¹⁾ 『신보수교집록』의 항목 구성을 『수교집록』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수교집록』과 『신보수교집록』의 항목 계승성 비교

구분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구분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吏典	官職*	46	京官職*	62	兵典	捕虎	1	留防	7
	除授	9	外官職*	12		徙民	12	復戶	1
	相避	15	薦舉	2		軍律	14	軍器	11
	守令	13	褒貶	8		驛路	28	兵船	4
	功臣	3	考課	1		廐牧	5	烽燧	4
	褒貶	2	給暇	1		烽燧	4	廐牧	8
	雜令	27	相避	4		兵船	3	獎勸	7
			祭享	1				驛路	11
			雜令	23				捕虎	3
			守令	44				雜令	6
		功臣	46			軍制	33		

8) 영조년간 법제정비사업의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백철, 앞의 논문(2008a), 191~207쪽.
 9) 『수교집록』과 『전록통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백철, 「조선후기 숙종대 『수교집록』 편찬과 그 성격」, 『동방학지』, 140(2007a); 김백철, 「조선후기 숙종대 국법체계와 『전록통고』의 편찬」, 『규장각』, 32(2008b).
 10) 김백철, 앞의 논문(2008a), 199쪽, “<표 2> 『신보수교집록』수교의 연대분포”
 11) 김백철, 앞의 논문(2007a), 141쪽.

戶典	諸田	19	戶籍	16	刑典	賞典	10		
	徭賦	20	量田	16		徒民	3		
	收稅	2	祿科*	2		軍律	20		
	戶籍	30	諸田	39		軍需	9		
	漕轉	31	堤堰	5		推斷	56	決獄日限	1
	祿奉*	5	支供	1		濫刑	3	囚禁	1
	給復	5	解由	49		偽造	6	推斷	130
	還上	4	收稅	1		禁制	106	禁刑日	3
	解由	21	漕轉	40		賊盜*	22	濫刑	2
	徵債	7	買賣限*	6		告訴*	11	偽造	9
	作紙	3	徵債	15		殺獄	9	恤囚	13
	買賣*	6	徭賦	6		檢驗	4	贓盜*	51
	雜令	8	雜令	15		奸犯	7	用刑	9
			給復	3		赦令	7	屬公	3
		還上	15	公賤	59	禁制	221		
禮典	科擧*	41	諸科*	25	私賤	16	犯越	14	
	朝儀*	4	儀章*	3	贖良	147	訴冤*	14	
	祭禮	7	祭禮	4	補充隊	4	賤妻妾子女	1	
	勸獎*	17	立後	1	聽理	38	公賤	40	
	婚禮*	3	婚嫁*	1	決獄日限	9	私賤	11	
	惠恤	10	山訟	24	文記	5	殺獄	24	
	喪葬	4	獎勵*	5	雜令	13	奸犯	11	
	給暇	1	頒水	4			赦令	9	
	立後	8	惠恤	50			贖良	6	
	奉祀	8	京外官迎送	3			補充隊	1	
	雜令	27	京外官相見	2			聽理	17	
			雜令	20			雜令	15	
			待使客	1			省鞠	8	
			用文字式	1					
兵典	官職*	32	京官職*	17	工典	營繕	2	橋路	1
	軍制	41	外官職*	4		雜令	5	營繕	1
	諸科*	17	試取	14				度量衡	1
	試取	15	都試*	6				雜令	29
	賞典	9	褒貶	1				工匠	3

※ 범례) ■: 유사항목 표시 / *: 명칭이 개정된 경우 / 굵은 표시: 典분류가 변경된 경우.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항목을 설정한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수교집록』 「吏典」의 ‘官職[京官職/外官職]’, ‘相避’, ‘守令’, ‘功臣’, ‘褒貶’, ‘雜令’ 등의 항목은 『신보수교집록』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설정되었다. 「戶典」에서는 ‘諸田’, ‘徭賦’, ‘收稅’, ‘戶籍’, ‘漕轉’, ‘祿俸[祿科]’, ‘給復’, ‘還上’, ‘解由’, ‘徵債’, ‘買賣[買賣限]’, ‘雜令’, 「禮典」 ‘科擧[諸科]’, ‘朝儀[儀章]’, ‘祭禮’, ‘勸獎[獎勸]’, ‘婚禮[婚嫁]’, ‘惠恤’, ‘立後’, ‘雜令’, ‘給暇[→吏典]’, 「兵典」 ‘官職[京官職/外官職]’, ‘軍制’, ‘諸科[都試]’, ‘試取’, ‘賞典’, ‘捕虎’, ‘徙民’, ‘軍律’, ‘驛路’, ‘廐牧’, ‘烽燧’, ‘兵船’, 「刑典」 ‘推斷’, ‘偽造’, ‘禁制’, ‘賊盜[贓盜]’, ‘告訴[訴冤]’, ‘殺獄’, ‘奸犯’, ‘赦令’, ‘公賤’, ‘私賤’, ‘贖良’, ‘補充隊’, ‘雜令’ 등이다. 이러한 항목간 유사성은 양자에 실린 受敎의 연속성이 짙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양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은 17~18세기 당대의 주요 문제로 인식된 사안들로 이해되며, 당시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양상에서 실정법과 빠르게 변모되는 사회환경의 괴리에서 나오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수교집록』과 구분되는 특징도 아울러 보인다. 『신보수교집록』은 기록방식에서 『경국대전』체제와 현행법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수교집록』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만들어진 내역들이 대개 『신보수교집록』에서는 『경국대전』의 항목과 조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수교집록』에서 「吏典」과 「兵典」에서 ‘官職’으로 분류하던 것이 『신보수교집록』에서는 『경국대전』에 의거해서, ‘京官職’과 ‘外官職’으로 구분되었다. 「戶典」에서는 ‘祿俸’이 ‘祿科’로, ‘買賣’는 ‘買賣限’으로, 「禮典」에서는 ‘婚姻’이 ‘婚嫁’, ‘科擧’는 ‘諸科’로, 「兵典」 ‘諸科’가 ‘都試’로, ‘勸獎’은 ‘獎勸’으로, 「刑典」 ‘賊盜’가 ‘贓盜’로, ‘告訴’가 ‘訴冤’ 등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禮典」의 ‘朝儀’는 『경국대전』에 있는 항목이지만, 이보다 상위 항목으로 『경국대전』에 있던 ‘儀章’으로 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수교집록』에서는 「禮典」에 있던 ‘給暇’가 『신보수교집록』에서는 「吏典」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숙종대 『수교집록』찬집 목적과 영조대 『신보수교집록』찬집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전자는 누적된 수교의 집대성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후자는 『경국대전』의 修明사업의 일환으로 『신보수교집록』의 편찬이 진행되어 기존의 법체계와의 연계성이 주요하게 검토된 결과였다.

또한 각 官署의 변화에 대해서 『수교집록』에서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수교집록』이 수교를 집대성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조선전기 議政府와 六曹로 대변되던 중앙정부조직을 조선후기에 와서 備邊司를 중심으로 하는 합좌체제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신보수교집록』 「吏典」에 ‘備邊司’(명종대)이란 항목으로 반영되었다.¹²⁾ 게다가 조선후기 5軍營의 설립근거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조선전기 5衛制가 실질적으로 5軍營으로 변화된 사실도 반영되어, 「兵典」에는 ‘摠戎廳’(인조대), ‘御營廳’(인조대), ‘訓練都監’(선조대), ‘禁衛營’(숙종대), ‘守禦廳’(인조대) 등의 5군영이 모두 수록되었다. 그외에도 「吏典」 ‘宣惠廳’(광해군), 「兵典」 ‘南漢’ 등도 附記되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문들에 대한 존립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¹³⁾ 『속대전』 「병전」 ‘軍營衙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摠戎廳, 御營廳, 訓練都監, 禁衛營, 守禦廳[남한산성] 등의 5군영이 수록되었다.¹⁴⁾ 곧 『신보수교집록』의 1차적인 목표는 숙종 후반~영조 초반 수교의 정리였으나, 편찬동기는 『경국대전』 修明논의에서 촉발된 조선의 국법체계와 현행법의 일치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당대 실재하지만 법전에는 근거문헌이 없었던 관서들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관료체계의 보완

국가체계의 재조정시 衙門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자, 이제 각 이문에서 실제

-
- 12) 『신보수교집록』 「吏典」에서는 ‘備邊司’(명종대)나 ‘宣惠廳’(광해군) 등의 설립근거가 처음 나타나는데, 이것이 『속대전』에서도 「吏典」에 수록되었다. 다만, 『대전회통』에서는 ‘宣惠廳’이 「병전」으로 옮겨졌다. 『續大典』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備邊司 및 宣惠廳;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宣惠廳.
- 13) 이러한 기록은 『증보전록통고』과 『속대전』에 명기되었다. 영조초기 『경국대전』을 수명하는데 『전록통고』 증보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을 구체화했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증보전록통고』를 뛰어넘는 법전의 위상을 부여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경국대전』과 짝을 이루는 『속대전』으로 굳이 改名하였다. 이는 조선전기 문물제도를 구비한 시점을 당대 현실과 직접 비교하고자 했던 국왕의 의도가 반영된 사건으로 생각된다. 영조년간 국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론』, 51(서울대 국사학과, 2005), 288~309쪽.
- 14) 『續大典』 「兵典」 京官職, 軍營衙門, 摠戎廳; 『續大典』 「兵典」 京官職, 軍營衙門, 御營廳; 『續大典』 「兵典」 京官職, 軍營衙門, 訓練都監; 『續大典』 「兵典」 京官職, 軍營衙門, 禁衛營; 『續大典』 「兵典」 京官職, 軍營衙門, 守禦廳.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의 운영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이 보완되었다. 그래서 고위관직에 대한 임명규정을 상세화하였다. 주요 文翰職인 弘文館 副提學(정3품)을 차출할 때에는 吏曹 參議(정3품)가 啓로 청하여 절차를 갖추어 擬望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道(경상도·전라도·황해도 등)의 觀察使(중2품)는 該曹[吏曹]로 하여금 備邊司에 문의하여 차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正卿[정2품]도 口傳으로 차출할 수 없도록 하여 주요품계는 일정한 인사 절차를 통해서 임용하도록 하였다.¹⁵⁾ 또 武臣은 六鎭의 수령을 거친 후에야 兵馬節度使(중2품)와 水軍節度使(정3품)에 擬望하며, 수령 중에 비록 자급이 2품이상이라도 實職을 거치지 않은 자는 예우하지 않았다.¹⁶⁾ 아울러 『경국대전』을 본받아 한 관직에서 일정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하는 久任官제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¹⁷⁾

한편 양란이후 武備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었다. 17세기 이래 국왕들은 試射와 觀武才를 중시여겼다. 試射는 文武臣을 대상으로 일정 기한마다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활쏘기 대회였다.¹⁸⁾ 인조대이래 문신들에게까지 試射를 강조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 試射에 대해서는 매일 무신들이 시사에 응하도록 하였다.¹⁹⁾ 이러한 분위기가 국왕 주도의 특별 武科시험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무재는 국왕에 의한 親試로서 활용된 측면이 강했으며, 능행을 빌미로 환궁하는 길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15) 『新補受教輯錄』 「吏典」 京官職, 康熙 癸未(숙종29); 『新補受教輯錄』 「吏典」 外官職, 康熙 甲申(숙종30); 『新補受教輯錄』 「吏典」 京官職, 雍正 癸卯(경종3).

16)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 康熙 甲申(숙종30); 康熙 戊子(숙종34).

17) 久任官도 『수교집록』에서부터 보완작업이 시작되었다. 『受教輯錄』 「吏典」 官職, 嘉靖 丙午(명종1); 康熙 丁未(현종8); 康熙 壬子(현종3); 康熙 庚戌(현종11); 康熙 壬戌(숙종8); 『新補受教輯錄』 「吏典」 京官職, 康熙 戊戌(숙종44); 雍正 癸卯(경종3); 雍正 甲辰(경종4); 雍正 丁未(영조3); 雍正 辛亥(영조7);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 康熙 乙未(숙종41); 雍正 丁未(영조3); 『續大典』 「吏典」 考課.

18) 『신보수교집록』에서는 觀武才를 중점적으로 다룬 반면에, 『수교집록』에서는 주로 試射를 상세히 다루었다. 『수교집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文臣에게도 매일 試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한 점이다. 시관은 육경이 돌아가면서 맡았으며, 더욱이 하루에 쏘아야 할 연습량까지 10순~15순으로 규정하였다. 무신에게는 더욱 강조하여 평상시에도 화살통을 차게할 정도였다. 騎射도 요구되어 더욱 고난도 훈련이 필요하였다. 禁軍에 대해서도 더욱 세밀한 규정을 두어 정예군화를 꾀하였다. 『受教輯錄』 「兵典」 試取, 崇禎 乙亥(인조13); 康熙 甲辰(현종5); 康熙 壬寅(현종3); 崇禎 甲戌(인조12); 康熙 丙午(현종7); 順治 癸巳(효종4); 順治 庚寅(효종1); 康熙 乙卯(숙종1); 順治 丁酉(효종8); 康熙 甲辰(현종5); 康熙 甲辰(현종5).

19) 『新補受教輯錄』 「兵典」 都試, 雍正 庚戌(영조6); 乾隆 丁巳(영조13).

도모하였다. 특히 국왕이 직접 闕武에 참석하면서 왕을 수행한 군사들만을 대상으로 특별무과인 관무재가 행해져 親衛軍士의 우대 및 확보책으로 활용되었다.²⁰⁾ 이러한 관무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²¹⁾ 觀武才를 치를 때 扈衛廳 각 廳의 付料軍官은 禁軍의 예에 따라 한 가지 技藝를 시취하고 나머지 軍官은 두 가지 기예로 試取하였다. 관무재가 있으면 守禦廳과 摠戎廳의 標下軍은 과거시험을 보도록 하였으며, 扈衛廳은 三廳의 군사들은 관무재의 초시를 볼 때 활쏘기 무예 한 가지로 시취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왕을 호위하는 친위군사에 대한 특혜조치였다.²²⁾

둘째, 관료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牌招에 응하지 않는 신료들에 대한 처벌이 다수 보인다.²³⁾ 숙종의 분노까지 엿보이는 수교가 실려있을 정도이다.²⁴⁾ 대개 국왕의 권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치였다.²⁵⁾ 또한 관료에 대한 기강확립조치는 免新禮를 금지하는 조치로도 나타났다.²⁶⁾ 이는 신임관료들에 대한 과도한 텃새부리기가 고참관료를 중심으로 한 관료조직 자체의 위계질서만을 강조하여, 오히려 오직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체제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²⁷⁾ 게다가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도 강화되었다. 臧吏의 자손은 淸職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탐욕을 부린

20) 『孝宗實錄』卷9, 孝宗 3年 8月 壬寅(3日); 『顯宗實錄』卷6, 顯宗 3年 10月 癸卯(3日).

21) 관무재는 조선전기부터 설행되었으나 정례화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新補受教輯錄』「兵典」試取, 康熙 甲戌(숙종20); 雍正 甲寅(영조10).

22) 觀武才에 관한 사항은 『속대전』 「명진」 「試取」에 반영되어, 觀武才初試와 覆試 규정으로 세분화되었다. 관무재와 시사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定式으로 자리잡아 재정리되었다. 더욱이 향후 文臣까지도 시사에 매일 참여해야 했다.

23) 『수교집록』~『속대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된다. 『受教輯錄』「吏典」雜令, 嘉靖 甲申(중종19), 崇禎 □□, □□□□; 『續大典』「吏典」雜令; 『新補受教輯錄』「吏典」雜令, 康熙 乙亥(숙종21); 雍正 癸卯(경종3); 『新補受教輯錄』「禮典」諸科, 康熙 乙酉(숙종31).

24) 숙종 16년 “差備 안에서 별감에게 분부하여 경기감영의 아전을 불러들이도록 하였는데 감사가 빈말이라고 핑계대며 끝내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통탄스럽고 해괴하다”고 하고, 감사는 파직하고 영리는 한 차례 엄하게 형벌을 가한 후 도3년에 정배하였다. 『新補受教輯錄』「刑典」推斷, 康熙 庚午(숙종16).

25) 『新補受教輯錄』「刑典」推斷, 雍正 甲辰(경종4); 雍正 甲寅(영조10).

26) 『新補受教輯錄』「刑典」禁制, 康熙 甲戌(숙종20); 『新補受教輯錄』「兵典」軍制, 康熙 丁酉(숙종43).

27) 『수교집록』에서는 유관 수교가 이미 확인된다. 『受教輯錄』「禮典」雜令, 嘉靖 癸丑(명종8); 『受教輯錄』「禮典」雜令, 康熙 庚申(숙종6); 『受教輯錄』「刑典」禁制.

자는 銓曹[吏曹]에서 아예 거론하지 못하게 하였고, 수령이 頌德碑를 세우고 사당을 짓는 행위는 금지되었다.²⁸⁾ 뿐만 아니라 贓罪를 지으면 그를 천거한 자까지 죄를 주는 조치가 수차례 강조되었다.²⁹⁾

셋째, 蔭官제어가 주목된다.³⁰⁾ 영조년간 蔭敍에 의한 관직진출에 제한조치가 계속 내려졌다. ‘京官職’에서는 음관을 各寺의 正[정3품당상관]에 의망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각별히 삼가고, 三曹(戶·刑·工曹)의 郎官은 文臣과 武臣 가운데 차정하였다.³¹⁾ 이는 음서 진출자를 제한하면서 실력에 따라 서얼출신들의 서용은 확대하는 정반대의 궤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음관은 6품에 오르거나 외직으로 나갈 때 반드시 都目政事와 詞訟官 등의 실무경력을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³²⁾ 이러한 조치들은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던 음서출신들의 실무능력을 확인하고자 외방의 목민관 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사절차를 체계화한 사례이며, 점차 신분위주의 관료사회 진출보다는 능력위주로 사회발전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넷째, 지방관은 모두 任免時 對面交代하여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³³⁾ 左右兵使와 水使, 統制使, 各營將, 僉使, 萬戶, 北評事 등은 각각 그 지방에서 印符

28) 『新補受教輯錄』 「吏典」 京官職, 雍正 辛亥(영조7); 『新補受教輯錄』 「吏典」 褒貶, 康熙 己亥(숙종45); 『新補受教輯錄』 「吏典」 雜令, 康熙 丁酉(숙종43).

29)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 康熙 丁亥(숙종33); 康熙 辛卯(숙종37); 雍正 丙午(영조2); 雍正 甲寅(영조10).

30) 조선전기 蔭敍는 고려의 유습으로 『경국대전』에는 ① 功臣이나 2품이상의 子·孫·婿·弟·姪(願從功臣은 子·孫), ② 實職 3품이상의 子·孫, ③ 일찍이 吏曹·兵曹·都總府·三司·副將·宣傳官을 거친 이의 孫을 대상으로 하여 양반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특권적 지위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다.

31) 이는 『수교집록』에서 “중추부의 경력과 삼조[호조·형조·공조]의 낭관 각1원은 무신으로 차출하고 음관 몫의 감찰 두 자리는 무신으로 더 차출한다”고 한 내용을 계승한 내용이다. 또한 여기서 三曹의 郎官은 인조대 이후 서얼의 허통으로 지목된 要職이었다. 『受教輯錄』 「吏典」 除授, 康熙 乙卯(숙종1); 『新補受教輯錄』 「吏典」 京官職, 雍正 丙辰(영조12); 이준구, 「조선후기의 『業儒·業武』와 그 지위」, 『진단학보』, 60(1995).

32) 『新補受教輯錄』 「吏典」 外官職, 康熙 癸巳(숙종39);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 雍正 己酉(영조5); 『續大典』 「吏典」 考課.

33) 대면교대도 『수교집록』에서부터 이미 확인된다. 『受教輯錄』 「吏典」 守令, 嘉靖 庚申(명종15); 康熙 庚申(숙종6); 『受教輯錄』 「兵典」 官職, 康熙 癸卯(현종4); 『新補受教輯錄』 「吏典」 雜令, 雍正 丁未(영조3); 雍正 甲寅(영조10).

를 인수인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였다. 심지어 수령을 잡아 처벌하는 경우까지 대면교대한 후에 잡아오도록 하였을 정도였다. 이는 지방의 국가통치력을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면 정교한 관료제망을 통한 국가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결국, 다양한 관료체제의 보완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나타나는 국가기강의 해이현상을 극복하고 국왕의 국가통치에 필요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III. 사회변동의 대응

1. 경제정책

법제정비시 주요하게 인식된 경제적 변화는 국가의 稅制개편과 경제법규의 증가로 나타났다. 17세기 세제상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대동법의 실시였다.³⁴⁾ 광해군대에서 숙종대에 이르는 약 1세기간 점진적인 확대실시 과정이 바로 『수교집록』과 『신보수교집록』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³⁵⁾ 『수교집록』에서는 「戶典」 ‘徭賦’에 大同法의 실시연혁을 필두로 하여 三南大同事目을 수록하면서 대동법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상세히 설정되었다.³⁶⁾ 『신보수교집록』에 가면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생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이 「吏典」, 「戶典」, 「禮典」, 「刑典」등에 걸쳐 두루 제시되어있다. 주로 대동미의 징세와 관련된 조치들이 다수 확인되나,³⁷⁾ 大同米를 錢이나 布로 납부할 경우 현물화폐 상호간 가격차이에서 오는 이익을 취하

34) 『속대전』에서는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대동법을 실시한다”고 명문화하였다. 『續大典』 「戶典」 徭賦.

35) <표 2> 大同法 관련 수교 수록현황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		1	戶典	漕轉		3
	徭賦	14	1		還上		3
戶典	解由		4	禮典	獎勸		1
	收稅		2	刑典	推斷		1

36) 『受教輯錄』 「戶典」 徭賦; 『受教輯錄』 「戶典」 徭賦, 康熙 辛未(숙종17).

37) 『新補受教輯錄』 「吏典」 守令, 雍正 丙辰(영조12); 『新補受教輯錄』 「戶典」 解由, 康熙 戊戌(숙종44); 雍正 癸丑(영조9).

고자 하는 행위, 방납을 피하는 행위, 포목의 두께를 속이는 행위 등도 주요문제로 인지되고 있었다.³⁸⁾ 이는 현물화폐간 교환과 시기별 차이에서 오는 가격변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반증하는 자료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외국과의 밀무역에 대한 제한조치가 주목된다. 숙종~영조년간 조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밀무역의 금지대상 교역국은 청나라와 일본이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품목은 인삼무역이었다. 왜관이나 대마도 등에서 인삼을 거래하는 것이 엄격히 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와의 무역시에도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다.³⁹⁾ 備局節目(숙종33)과 禁蔘節目(숙종34)를 만들어 인삼의 밀무역을 더욱 통제하고 국가의 공무역의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였다.⁴⁰⁾ 정부는 인삼의 생산지와 품질도 관리하였다.⁴¹⁾ 이는 인삼이 중국에서 高價에 거래가 가능하여, 대중국 무역에서 국가의 결재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결재수단에 대한 제어는 국내시장에서는 私鑄錢 단속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위조화폐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경제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극형에 처해졌다.⁴²⁾

셋째, 亂塵에 대한 규정들이 확인된다. 난전을 단속하는 관리기관이 三法司(형조·사헌부·한성부)와 평시서, 한성부 등으로 변갈아가며 바뀌었고, 이들의 단속권 한도 시기별로 변하였다.⁴³⁾ 그런데 숙종 39년의 변화가 주목된다. 이때 바로 난전을 연 자는 市塵상인으로 하여금 잡아가게 하여 조사하고 치죄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⁴⁴⁾ 이는 정부와 시전의 유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조년간 금난전권의 폐지조치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속 자체도 늘 유효하지만은 않았다.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서부터 단속을 빙자하여 재물을 탐하는 사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⁴⁵⁾ 이러한 조치들은 날로 늘어나는 상품 수요가

38) 『新補受教輯錄』「戶典」收稅; 『新補受教輯錄』「戶典」收稅, 雍正 丙辰(영조12).

39) 『新補受教輯錄』「刑典」禁制, 康熙 戊寅(숙종24); 雍正 丁未(영조3).

40) 『新補受教輯錄』「刑典」禁制, 副局節目, 康熙 丁亥(숙종33); 禁蔘節目 康熙 戊子(숙종34); 康熙 戊子(숙종34).

41) 『新補受教輯錄』「刑典」禁制, 康熙 己丑(숙종35); 雍正 丁未(영조3); 雍正 庚戌(영조6); 雍正 辛亥(영조7); 乾隆 丙辰(영조12).

42) 『新補受教輯錄』「刑典」偽造, 康熙 乙亥(숙종21); 康熙 丙子(숙종22).

43) 『新補受教輯錄』「刑典」禁制, 康熙 庚辰(숙종26); 康熙 丙戌(숙종32); 康熙 丁亥(숙종33); 康熙 庚寅(숙종36); 康熙 辛卯(숙종37).

44) 『新補受教輯錄』「刑典」禁制, 康熙 癸巳(숙종39).

난전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형성되어나가는 진통을 반영하는 자료들로 파악된다. 이는 시전상인이 국가의 조세체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등장한 난전의 사회적 역할을 어떤 형식으로 재규정할 것인가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정책들은 세제의 근간이 되는 대동법, 국가의 대외무역결제수단, 국내화폐 유통의 문제, 국내시장의 유통질서의 확립문제 등 한결같이 국가의 경제정책상 근간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변동양상에서 경제적 변동이 국가에 얼마나 주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었는가를 반증해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2. 사회불만세력의 증대

조선후기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동에서 생계기반을 잃고 낙오하는 무리들도 다수 확인된다. 이들은 단순히 유랑에 그치지 않고 집단을 이루면서 도적떼로 변신하기도 하였다.⁴⁶⁾ 이를 정부에서는 토벌대상으로 간주하여 ‘明火賊’으로 규정하였다.⁴⁷⁾ 무리지어 길을 막고 남의 재물을 겁탈한 자도 모두 명화적으로 간주되어 극형에 처하였다. 또한 도적떼에서 반정부운동으로도 전이되기도 하였다. 掛書를 통해서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붙이는 방식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궤서사건은 숙종대부터 이미 나타나서 한 해의 수교로만 모두 4건이 확인될 정도이다.⁴⁸⁾

더욱이 단순한 불만을 벽서로 제시하는 경우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물리적인 행동으로까지 전개되었다. 下吏들이 獄을 열어 죄수를 풀어주거나,⁴⁹⁾ 심지어 吏卒들이 병마절도사를 죽이기를 모의하는 극단적이 사례, 邑民이 官長을 향하여

45)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46) 사회변동과 관련해서 새롭게 대두하는 집단의 활동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이 참고된다. 정석중,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90); 정석중,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한길사, 1994).

47) 『新補受教輯錄』 「刑典」 贓盜, 購捕節目, 康熙 乙亥(숙종21).

48) 『新補受教輯錄』 「兵典」 賞典, 康熙 辛卯(숙종37); 『新補受教輯錄』 「兵典」 賞典, 康熙 辛卯(숙종37);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辛卯(숙종37).

49)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甲子(숙종10); 雍正 甲寅(숙종40); 康熙 戊戌(숙종44); 康熙 庚子(숙종46); 『續大典』 「刑典」 推斷.

발포한 사례,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변란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급변하는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들이 점차 불만세력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부는 반역세력에 대한 철퇴와 소외되고 낙오되는 소민이 불만세력으로 변하지 않도록 차제에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세력에 대한 체제 내 편입하는 등 다양한 방편의 사회정책을 고려하여야만 했다.

3. 사회적 신분과 계층의 변동

『신보수교집록』에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변화와 연관된 자료들이 다수 실려 있다. 먼저, 驛役의 승계문제에서 奴婢從母法의 영향이 확인된다. 『수교집록』과 『신보수교집록』에는 驛役에 대한 수많은 수교가 실려 있다.⁵⁰⁾ 최종 수교만을 대상으로 驛役 계승자의 신분을 확인해 보면, 驛吏-公私賤, 驛奴-良女, 驛奴-公私賤, 良夫-驛婢, 賤夫-驛婢 등에서 모두 동일한 신분이 인정되어 변화가 없었으나, 오직 公私賤-驛女의 관계에서만 『수교집록』에서는 아들은 驛奴, 딸은 驛婢로 하여 一賤即賤의 원칙이 적용되던 반면, 『신보수교집록』에서는 아들은 驛吏, 딸은 良女로 모두 從母法이 적용되어 양인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숙종년간 치열하게 점화되었던 노비종모법 논쟁이 영조초반에 가서야 해소되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⁵¹⁾

또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신분의 변화도 합법화되었다. 조정에서는 흥

50) <표 3> 『수교집록』과 『신보수교집록』 驛役 承繼

구분	구분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비고
	夫	妻	男	女	南	女	
驛役 [夫]	驛吏	良女	驛吏	驛女			
	驛吏	公私賤	賤人	賤人	公私賤	公私賤	유지
	驛奴	良女	驛吏	驛女	驛吏	驛女	유지
	驛奴	公私賤	驛奴	賤人	驛奴	公私賤	유지
驛役 [妻]	良夫	驛女	驛吏	良人			
	良夫	驛婢	驛奴	驛婢	驛奴	驛婢	유지
	公私賤	驛女	驛奴	驛婢	驛吏	良女	지위상승
	賤夫	驛婢	驛奴	驛婢	驛奴	驛婢	유지

51) 현종~영조년간에는 奴婢從母法이 수차례에 걸쳐 개폐되었다. 현종 10년 노비종모법이 실시되었으나, 숙종 원년에 번복되었다. 또 숙종 7년 노비종모법이 다시 실시되었으나, 숙종 15년 번복되었다가 영조 7년에 가서야 회복되었다.

년에는 진휼할 곡식을 납부하면 일정한 품계를 내려주는 납속책을 실시하였다.⁵²⁾ 대기근이 닥쳐오는 시기마다 적극적인 진휼정책이 취해지면서 納粟空名帖을 발급하였으며, 서얼에게도 납속을 통한 허통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公賤조차도 米160석을 낸 자는 장예원에서 면천하였다.⁵³⁾ 그외에 공사천으로 새로 양인이 된 자, 여러 명목의 군공이나 납속으로 影職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忠翊衛에 소속시켰다.⁵⁴⁾ 이는 조선전기 補充隊를 통한 신분상승의 방식 외에 忠翊衛가 새로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진휼대책은 광범위한 사족·양민의 품계 획득과 假設職의 진출 등으로 경제력에 기초한 신분의 수직상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얼의 신분규제도 완화현상도 속종년간에 두드러진다.⁵⁵⁾ 서얼 자신의 경우, 명백히 사족과 신분을 구분하여서 科場에서 幼學을 쓰지 못하여 業武나 業儒로 구분되었으나, 아들이나 손자부터는 사대부를 지칭하는 幼學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⁵⁶⁾ 이는 사실상 서얼의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⁵⁷⁾

아울러 지방의 신분과 계층에 대한 갈등상황과 이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도 엿보인다. 먼저, 타지방에 비해 관료진출이 적었던 서북인을 특별히 배려하여 5軍門의 哨官 10자리를 서북인의 자리로 배정하였다.⁵⁸⁾ 이는 영조~정조년간 서북인 우대조치와 동일한 맥락이다.⁵⁹⁾ 또 지방에서 새로이 성장하는 세력과 기존 향촌세력이 新郷과 舊郷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 “郷戰”으로 표현되었는데,⁶⁰⁾ 郷戰을 규제하는 수교도 확인된다.⁶¹⁾ 이는 당시 지방에서 벌어진 사회적 변

52) 『肅宗實錄』卷 17, 肅宗 12年 8月 丁丑(25日).

53) 『新補受教輯錄』「禮典」惠恤, 賑恤事目, 康熙 戊戌(숙종44).

54) 『新補受教輯錄』「吏典」功臣.

55) 『受教輯錄』「吏典」官職, 順治 乙酉(인조23); 『受教輯錄』「禮典」科擧, 順治 庚子(현종1); 『受教輯錄』「禮典」科擧, 康熙 乙巳(현종6).

56) 『新補受教輯錄』「戶典」戶籍, 康熙 戊子(숙종34).

57) 조선후기 서얼의 신분변화에 대해서 법전자료와 연대기자료를 연계하여 다룬 연구가 있어 참고된다. 이준구, 앞의 논문(1995).

58) 『新補受教輯錄』「兵典」京官職, 康熙 戊子(숙종34).

59) 18세~19세기 실제 서북인의 중앙정계 진출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일조각, 2002).

60) 『英祖實錄』卷8, 英祖 元年 11月 丁巳(23日).

61) 『新補受教輯錄』「刑典」推斷, 雍正 壬子(영조8); 『續大典』「刑典」禁制.

화와 신분갈등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보수교집록』에서 처음으로 ‘山訟’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山訟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이다.⁶²⁾ 산송은 선조를 모시는 先山의 소유권문제로 비화된 듯하지만, 이는 단순히 葬禮의 장소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소송이 常漢과 士族간에도 폭넓게 전개되어 신분간 갈등과 이완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⁶³⁾ 결국,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는 사회변동과 함께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온 신흥세력에게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합법적인 체계 내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시책이었다.

IV. 백성의 부각

1. 小民보호책

18세기 법제 정비사업에서는 ‘백성’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조치들이 주목된다. 이는 백성들의 사법수요를 합법적인 국가체계 내에서 조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교집록』에서 登聞鼓를 쳐서 상언하는 것은 ㉠형벌로 자신이 죽게 된 경우, ㉡父子, ㉢嫡妻-妾, ㉣良人-賤人 등의 관계를 분간하는 일에 대해서만 허락되었다.⁶⁴⁾ 반면에 『신보수교집록』은 사안 자체보다 억울함을 청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내용이 변하였다. ㉠손자가 조부모를 위하거나, ㉡부인이 남편을 위하는 경우, ㉢아우가 형을 위하는 자, ㉣지극히 원통한 일로 하는 자 등에 대해서 허용되었다.⁶⁵⁾ 결국 『수교집록』은 내용이, 『신보수교집록』은 주체가 명기되었으며, 이 모두 『속대전』에 併記되었다.⁶⁶⁾ 『신보수교집록』에는 上言·擊錚에 대해서 『수교

62) 산송에 사용된 고문서자료[所誌]에 대한 통계처리와 체계적인 내용분석이 이루어져, 법전의 명문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밝힌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2002).

63) 『新補受教輯錄』 「禮典」 山訟, 康熙 丁酉(숙종43); 康熙 甲午(숙종40).

64) 『受教輯錄』 「刑典」 告訴, 嘉靖 己巳(명종12).

65) 『新補受教輯錄』 「刑典」 訴冤, 康熙 甲申(숙종30); 『續大典』 「刑典」 訴冤.

66) 『續大典』 「刑典」 訴冤.

집록』보다 한층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⁶⁷⁾ 이로써 訴冤제도는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되어나갔다.⁶⁸⁾

그러나 폐단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山訟에서 패소해놓고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여서 다시 격쟁한 자는 발생하여,⁶⁹⁾ 양편을 함께 불러서 曲直을 분별하여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노력하였다.⁷⁰⁾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 송사를 시도하거나,⁷¹⁾ 전답문제나 산송, 노비 추쇄나 빚 독촉 등으로 격쟁을 하는 경우는 제약하고자 노력하였다.⁷²⁾ 이러한 조치들은 소원과 송사가 일반 민들에게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濫用되고 있다고 파악할 정도로 백성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국왕이 모든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준다는 의미뿐 아니라 누가 제도를 악용하는지를 간별해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豪強한 무리의 民家침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들이 수차례 반복되어 나타났다. 외방에서는 호강한 무리가 民丁을 雇工이라 칭하거나 婢夫라고 칭하여 모두 率下로 등록하는 현상에 대해서 엄단하는 조치가 확인된다.⁷³⁾ 노비 추쇄시 민가를 침탈하는 제반행위도 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⁷⁴⁾ 여염집을 빼앗는 부류에 대해서는 매달 帛를 올려 보고하도록 하였고 외방에서는 관찰사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⁷⁵⁾ 특히, 書院에서 쇠잔한 백성을 억압하여 많은 수를 거두어들이거나,⁷⁶⁾ 雇工을 그대로 노비로 삼아 冒錄하거나,⁷⁷⁾ 토호나 관속이 백성들의 전결을 겹주어 빼앗는 경우,⁷⁸⁾ 贖良한 뒤 옛상전이라 칭하면서 침해하는 경우⁷⁹⁾ 등에 대해서는

67) 『新補受教輯錄』 「刑典」 訴冤, 康熙 丁亥(숙종33); 康熙 辛卯(숙종37).
 68) 『승정원일기』에 실려있는 정조년간 상언·격쟁 사례를 토대로 실제 법조문의 운영양상을 밝힌 연구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일조각, 1996).
 69) 『新補受教輯錄』 「禮典」 山訟.
 70) 『新補受教輯錄』 「刑典」 訴冤, 康熙 己卯(숙종25).
 71) 『新補受教輯錄』 「刑典」 訴冤.
 72) 『新補受教輯錄』 「刑典」 訴冤, 康熙 甲申(숙종30); 雍正 丁未(영조3).
 73) 『新補受教輯錄』 「戶典」 戶籍.
 74)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康熙 乙亥(숙종21); 雍正 辛亥(영조7).
 75)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康熙 乙亥(숙종21); 雍正 乙卯(영조11); 乾隆 丙辰(영조12).
 76) 『新補受教輯錄』 「戶典」 量田, 康熙 乙亥(숙종21); 『續大典』 「戶典」 學田, 註.
 77) 『新補受教輯錄』 「戶典」 戶籍, 康熙 壬午(숙종28).
 78)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雍正 壬子(영조8).

한결같이 전가사변률로 처벌하여 정부의 강경한 처벌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급변하는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小民의 위치가 더욱 열악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보호해야했기 때문이다.

셋째, 연좌제에 대한 완화조치가 주목된다. 敗船한 사공과 격군이 변상하지 못하면 절도의 奴로 삼도록 하였으나 妻子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어 연좌가 완화되었다.⁸⁰⁾ 나라의 곡물을 훔쳐 一罪[死刑]로 판결한 후에는 곡물을 탕감해주고 一族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⁸¹⁾ 불법으로 刑訊하여 사람을 죽게 한 관리는 엄단했지만 단지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⁸²⁾ 심지어 전가사변도 重罪를 짓지 않은 경우에는 죄지는 당사자가 죽으면 가족들은 풀어주도록 하였다.⁸³⁾ 宦官이 역적죄를 범하여 연좌할 때에도 양부나 양자는 정배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였다.⁸⁴⁾ 역적으로 실제 군사를 일으킨 자 외에는 형제와 처첩을 죄주지 않았다.⁸⁵⁾ 부자가 각기 역모를 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을 알고서 동참했다는 것으로 바로 연좌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⁸⁶⁾ 이러한 조치들은 주모자를 중심으로 처벌하여 간접적인 연루자에게는 연좌하지 않고자 하는 방침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흉년에는 棄兒대책을 마련하였다.⁸⁷⁾ 「禮典」 ‘惠恤’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버려지는 아이들이 다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事目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양인과 공사천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버려져서 굶어죽는 것을 막는데 일차목표를 두었다. 얼마간 흉년이 들어 양육할 경우 노비로 삼는 것조차 허

79) 『新補受教輯錄』 「刑典」 公賤.

80) 『新補受教輯錄』 「戶典」 漕轉, 康熙 辛卯(숙종37).

81)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庚子(숙종46).

82) 『新補受教輯錄』 「刑典」 濫刑, 嘉靖 戊申(명종3); 『續大典』 「刑典」 濫刑.

83) 『新補受教輯錄』 「兵典」 徙民, 康熙 壬辰(숙종38); 康熙 壬午(숙종28).

84)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壬寅(경종2); 『續大典』 「刑典」 推斷.

85) 『속대전』에서는 부녀자들도 직접 역모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면, 鞫問 자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 역적 首魁의 형제와 처첩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지만, 註에서 다시 “병력을 동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지 本律[謀反大逆]에 의한다”고 적시하였다.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雍正 己酉(영조5); 『續大典』 「刑典」 推斷.

86)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雍正 庚戌(영조6); 『續大典』 「刑典」 推斷.

87) 이러한 지침들은 『수교집록』에서 규정된 진휼정책과 맥이 닿는 조치들이다. 『受教輯錄』 「禮典」 惠恤, 嘉靖 丁未(명종2); 康熙 丙午(현종7); 崇德 癸未(인조21); 康熙 庚戌(현종11).

용하면서 이를 양육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양육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혹은 몇살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되었다. 흥년이 극심할수록 최소한의 나이제한조치는 완화되었다.⁸⁸⁾ 이 경우 신분문제보다는 餓死상태에서 우선 구제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았다.

다섯째, 노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移轉米에 물을 탄 경우 변방에 정배하였으나 실상을 알았더라도 老弱者는 徒3년 定配에 그쳤다.⁸⁹⁾ 어린 아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감형조치가 취해져, 14세인 아이 도적은 刺字를 면하고 절도에 노비로 삼았다.⁹⁰⁾ 궁궐 軍堡 안에 출입을 차단하는 나무를 잘라내어 훔쳐간 죄인은 3년 정배하였는데, 隨從人으로 15세 이하는 贖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였다.⁹¹⁾

또한 노인은 나이를 감안하여 일정 부분 감형하였다. 옛무덤을 장지로 쓰면서 광 밖으로 백골이 낭자하도록 만든 경우, 무덤과는 일을 주장한 家長은 나이가 78세 이면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섬에 정배하고 그 아들은 먼 곳에 정배하였다.⁹²⁾各司 노비로 도망한 사람은 70세 이상을 한도로 身貢을 감해주었다.⁹³⁾ 역적의 아비라도 80세 이상인 자는 絶島에 定配하는 선에서 조치하였다.⁹⁴⁾ 호적에서 누락한 죄를 지은 사람은 漕軍이나 水軍에 充定하였으나, 60세가 넘으면 贖을 견도록 하였다.⁹⁵⁾

여섯째, 고리대를 제한하는 법이 부각되었다.⁹⁶⁾ 속중 초반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햇수의 제한을 3년으로 하고 이자는 연 2할을 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⁹⁷⁾ 그러다가 영조대에는 公債와 私債를 구분하여 공채는 연 1할로 낮추고 사

88) 『新補受教輯錄』 「禮典」 惠恤, 賑恤事目, 康熙 乙亥(숙종21); 雍正 壬子(영조8).

89) 『新補受教輯錄』 「戶典」 漕轉, 雍正 壬子(영조8).

90) 『속대전』에서는 강도의 주범으로서 사형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杖 1백과 絶島에 유배하여 노비가 되게 하였는데, 註를 두어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杖刑을 금하고 絶島에 유배하여 노비로 삼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신보수교집록』의 수교와 상통한다. 『新補受教輯錄』 「刑典」 贓盜, 康熙 癸巳(숙종39); 『續大典』 「刑典」 贓盜; 『英祖實錄』卷90, 英祖 33年 12月 壬戌(4日).

91) 『新補受教輯錄』 「刑典」 贓盜, 崇德 壬午(인조20).

92)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雍正 甲寅(영조10).

93)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戊午(숙종4).

94)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雍正 己酉(영조5); 『續大典』 「刑典」 推斷.

95) 『新補受教輯錄』 「戶典」 戶籍, 康熙 丁卯(숙종13).

96) 『受教輯錄』 「戶典」 徵債, 康熙 癸亥(숙종9), 康熙 壬申(숙종18); 『新補受教輯錄』 「戶典」 徵債, 康熙 丁酉(숙종43); 雍正 丁未(영조3).

97) 『新補受教輯錄』 「戶典」 徵債, 康熙 丁卯(숙종13); 康熙 乙未(숙종41).

채는 돈과 곡식을 구분하여 錢은 연 2할, 곡식은 연 5할로 하였다.⁹⁸⁾ 대신 이자의 제한 햇수를 1년으로 대폭 낮추고 채무유효기간도 공채 15년, 사채 20년을 기한으로 제한하였다.⁹⁹⁾ 채무자가 죽으면 빚도 더 이상 가족들에게 받을 수 없도록 막았으며,¹⁰⁰⁾ 전답이나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는 것도 제한하였다.¹⁰¹⁾ 또한 빌리고 갚을 때 계절차이로 인한 실질 가치의 변화도 막으려 노력하였다.¹⁰²⁾ 봄에 값을 빌려줄 때는 錢으로 값을 매기고 가을에는 곡식으로 받아들여 반년 내에 여러 갑절의 이익을 앗아서 얻는 경우가 많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여 엄히 다스리고 재물은 屬公하도록 하였다. 고리대 피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조치들이었다.

마지막으로 宮房의 折受를 제한하였다. 숙종 연간 궁방의 절수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되면서, 영조대까지 문제가 되었다. 대체로 대신들은 왕실의 궁방 절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다.¹⁰³⁾ 급기야 숙종대에는 대대적인 절수지 혁파가 단행되었다.¹⁰⁴⁾ 이러한 조치는 왕실이 민간의 토지소유를 침해하는 현상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시책들은 조선후기 사회경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해나가기 어려운 열악한 처지의 소민들을 보호하여 국가운영의 토대를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방안은 생각된다.

98) 결국 『속대전』에 가면 2할로 고정되었다. 『續大典』 「戶典」 徵債.

99) 『新補受教輯錄』 「戶典」 徵債, 雍正 丙辰(영조12).

100) 『속대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친부자 외에 형제 및 일족에게 추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新補受教輯錄』 「戶典」 徵債, 康熙 乙酉(숙종31); 康熙 辛卯(숙종37); 『續大典』 「戶典」 徵債.

101) 이 수교 역시 『속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新補受教輯錄』 「戶典」 徵債, 康熙 甲辰(현종5); 『續大典』 「戶典」 徵債.

102) 『新補受教輯錄』 「戶典」 徵債, 康熙 丁酉(숙종43); 雍正 丁未(영조3); 康熙 己卯(숙종25).

103) 『受教輯錄』 「戶典」 諸田, 康熙 戊申(현종9); 康熙 己酉(현종10); 康熙 癸卯(현종4).

104) 숙종 21년에는 전반적으로 숙종 14년 이전의 절수지를 인정하는 선에서 새로운 절수를 금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과도한 궁방의 절수지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궁방의 특성상 새로운 왕실가족의 탄생은 궁방절수를 필요로 하였다. 숙종 25년 이후에는 현재 절수지들을 정리하여 축소하는 대신 새로운 궁방의 절수지를 200결로 제한하여 보존해주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新補受教輯錄』 「戶典」 諸田, 康熙 戊午(숙종4); 康熙 乙亥(숙종21); 康熙 己卯(숙종25).

2. 寬刑主義 표방

조선후기 법제정비사업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刑政체계이다. 숙종대 편찬된 『수교집록』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법체계의 조정과 정리가 간절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실무적인 법제의 정비가 주요하게 인식되었다. 이후 영조대에는 이미 일정한 기초 정리가 마련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승하면서 국왕 주도의 정치적 명분까지 더하고자 하였다. 제도개혁의 명분으로 祖宗의 成憲인 『經國大典』의 修明論이 주류를 이루었다. 영조와 신료들이 내세운 『경국대전』수명의 전제는 바로 요순의 이상사회를 구축하는데 舊章을 수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⁰⁵⁾ 儒家에서 태평성세는 백성의 안정된 생활을 목표로 하였고, 이것이 백성에 대한 ‘寬刑主義’ 표방으로 외연이 확대되었다.¹⁰⁶⁾ 법제정의 취지를 밝히는 것은 영조대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¹⁰⁷⁾

『신보수교집록』중 「형전」의 비중만으로도 43.1%에 달한다.¹⁰⁸⁾ 하지만 형정의 내용들은 「형전」에만 분포되어있는 것은 아니어서 六典 전체를 토대로 인용된 근거법의 종류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신보수교집록』에는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경제육전 속집』, 『수교집록』 등 기존에 간행되어 반포되었던 법제들도 활용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경국대전』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신보수교집록』 편찬시 『경국대전』修明논의가 활발하던 상황을 반영하였다.¹⁰⁹⁾ 기존에 만들어진 事目·節目·定式 등과 受敎, 그리고 조선의 判例[我國例, 我國律] 등도 함께 실려있다. 이것은 그간 실무적으로 활용되어

105) 김백철, 앞의 논문(2008a), 191쪽.

106) 영조년간 형정은 전통적으로 당대위정자들의 표현을 채택하여 ‘관형주의’ 입장에서 연구되어왔다(김백철). 최근에는 역모사건의 실제 처벌과정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조운선). 이는 18세기 형정의 지향점과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상호보완이 된다.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속대전』 위상의 재검토: 「형전」 편찬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4(2007b); 조운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2009).

107)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而祁寒盛暑, 凍饑疾病, 間有非命致死, 其令中外官吏, 淨掃圜圉, 療治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糧, 如有懈緩不奉行者, 嚴加糾理.” 『新補受敎輯錄』 「刑典」 恤囚, 雍正 乙卯(영조11);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연구: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서울대 박사논문(2009), 7쪽.

108) 구덕회·홍순민, 앞의 논문, 14쪽, “<표 1> 각 전 수록 조항과 항목수.”

109) “伏願更令廟堂, 詳加商確深明大典本意.” 『新補受敎輯錄』 「刑典」 私賤, 定齋筵奏.

은 개별사안에 대한 법들을 『신보수교집록』에 모아서 하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에 활용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¹¹⁰⁾

<표 4> 『신보수교집록』 중 기존법제 활용도

구분	我國法							中國法
	經國大典	經濟六典 續集	受教輯錄	事目/ 節目/定式	受教	我國例	我國律	大明律
史典				10	1	15	3	9
戶典				15	5	23	10	70
禮典	7			8	2	9	3	20
兵典	3		1	4	6	15		10
刑典	4	1	1	17	17	11	32	81
工典				2			1	8
소계	14	1	2	56	31	72	48	198
	223							198

※ 당대 법조문 분류기준인 ‘○’단위로 구분하여 증추원본 및 한국역사연구회본과 조문수의 차이가 있으며, 사목류 등은 복수의 수교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위로 정리하였음.

刑政은 이러한 지표상의 특징 외에도 내용상에서도 숙종~영조년간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그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죄인을 임의로 구속하는 것에 대한 규제정책이었다. 『경국대전』에서는 直囚衙門이라고 하여 특수한 아문들만 직접 죄인을 가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점차로 아문의 수가 늘어나면서 직수아문이 아닌 곳에서도 광범위하게 죄인을 임의로 구류하는 폐단이 일어나서 이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었다. 죄가 가벼운 자는 태로 벌하고 무거운 자만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¹¹¹⁾ 내수사의 옥도 혁파하였다.¹¹²⁾ 이러한 조치들은 바로 『續大典』 「刑典」 ‘囚禁’에 內司獄 혁파, 직수아문 외 타아문의 구류제한 조치 등으로 반영되었다.¹¹³⁾

110) 수교에서는 죄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정할 때 기존의 법제들을 활용하였다. 我國例와 我國律로 분류한 것은 이전에 대체로 중국의 『대명률』에 의지하여 判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점차 우리나라의 실무관행을 참조하고[我國例], 우리나라에서 형량기준을 재조정된 사례를 인용한 사례들을 구분한 것이다[我國律].

111)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丁亥(숙종33).

112)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辛卯(숙종37).

113) 『續大典』 「刑典」 囚禁.

獄에 대한 운영지침도 세워졌다. 典獄署에 갇힌 중한 죄수 외에 죄명이 조금 가볍고 병이 매우 위중한 자는 獄官의 문서에 의한 보고를 기다려 月令醫가 살펴본 뒤 계를 올려 保放하도록 청하게 하였다.¹¹⁴⁾ 죄가 가벼운 죄수는 囚徒案을 토대로 뽑아내어 분간하여 풀어주는 조치가 확인된다.¹¹⁵⁾ 국왕 영조는 직접 죄수의 건강 관리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傳教를 내리기까지 하였다.¹¹⁶⁾ 심지어 유배장소까지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특별히 교지를 내린 경우가 아니면 흑산도를 배소로 정하지 않도록 하였다.¹¹⁷⁾ 이 모두가 죄인의 안전까지 고려한 정책이었다.

죄인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죄인으로 구류 중이라 할 지라도 상을 당한 경우에는 휴가를 주어 모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¹¹⁸⁾ 이러한 다소 특별한 대우는 기실 조선시대 옥에 갇힌 죄수들이 형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¹¹⁹⁾ 신속히 재판절차를 밟아서 장기간 옥에 갇혀있는 폐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¹²⁰⁾ 외방의 옥사에 대해서도 합동조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였다.¹²¹⁾

반면에 殺獄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우 신중한 절차들을 밟도록 경계하였다. 서울과 외방에서 법을 집행하는 관원은 적용할 형률을 검토할 때 사형에 해당하는 형률을 범한 자가 있으면 啓로 아뢰어 처치하도록 하여 멋대로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판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¹²²⁾ 살육과 관계되는 중한 죄수는 御使가 가뻐이 놓아주지 말고 돌아와 왕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도록 하였다.¹²³⁾ 어두울 때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¹²⁴⁾ 국왕 영조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

114)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康熙 戊寅(숙종24); 『續大典』 「刑典」 恤囚.
 115)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康熙 己卯(숙종25).
 116)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雍正 乙卯(영조11); 『續大典』 「刑典」 恤囚, 英祖 11年 下教.
 117)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雍正 丙午(영조2).
 118)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康熙 辛巳(숙종27); 康熙 乙酉(숙종31); 康熙 庚寅(숙종36); 『續大典』 「刑典」 恤囚.
 119) 전통시대 사법절차와 옥의 운영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상세하다. 심재우, 「심리록: 정조대 사형범죄 처벌과 사회통제의 변화」,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2005).
 120)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康熙 丙戌(숙종32);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辛丑(경종1).
 121)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乙未(숙종41); 雍正 丙午(영조2); 雍正 戊申(영조4); 『續大典』 「刑典」 推斷.
 122)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康熙 乙巳(현종6); 『續大典』 「刑典」 推斷.
 123) 『新補受教輯錄』 「刑典」 殺獄, 康熙 戊寅(숙종24).

은 자에게는 법전의 형률을 추후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좌에 걸려 귀양간 부류는 죄수들을 정리하여 풀어주도록 하였다.¹²⁵⁾ 아울러 살인하지 않았거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3차례 審理를 거쳐서 사형에 처하였다.¹²⁶⁾ 각 道의 殺獄은 관찰사가 강직하고 총명한 수령과 함께 조사하되,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京師로 이송하여 처결하였다.¹²⁷⁾

둘째, 신체에 대한 형벌도 엄격히 규제되었다. 軍兵衙門이 아닌데도 棍杖을 사용하는 것을 금단하였다.¹²⁸⁾ 곤장은 만약 사안이 군무와 관계된 자라면 30도를 한도로 제한하였다.¹²⁹⁾ 외방의 수령은 觀察使나 討捕使의 허가 후에 足杖을 시행하도록 제한하였다.¹³⁰⁾ 또한 영조는 壓膝刑을 폐지하였고, 좌우포도청에서 剪刀周牢刑을 혁파하였으며, 烙刑·圓杖 사용을 엄금하였다.¹³¹⁾

셋째, 죄인의 承服여부를 중시 여겼다. 반드시 본인의 진술로 인정해야만 죄를 확정짓도록 하였고,¹³²⁾ 진술을 번복한 경우에는 다시 승복을 받아야만 처벌하였다.¹³³⁾ 끝내 승복하지 않으면 방면하였다.¹³⁴⁾ 아울러 조작을 막기 위해서 죄인의 原情은 법정에서 구두로만 招辭를 받았다.¹³⁵⁾

넷째, 刑政에는 일정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 국왕의 최종 裁可를 얻도록 하였다. 의금부의 죄인에 대한 형추는 별도의 판부가 있을 때에만 엄히 형벌을 가할 수 있었다.¹³⁶⁾ 왕이 행차를 멈추고 막히고 원통함을 풀어줄 때 살육은 어사가 돌

124) 『英祖實錄』卷42, 英祖 12年 9月 甲午(3日); 『新補受教輯錄』「刑典」禁刑日, 康熙 庚戌(현종11); 『續大典』「刑典」禁刑日.
 125) 『新補受教輯錄』「刑典」推斷, 雍正 乙巳(영조1).
 126) 『新補受教輯錄』「刑典」贓盜, 雍正 戊申(영조4).
 127) 『新補受教輯錄』「刑典」推斷, 雍正 辛亥(영조7).
 128) 『新補受教輯錄』「刑典」用刑, 順治 □□; 『續大典』「刑典」濫刑.
 129) 『新補受教輯錄』「刑典」用刑, 康熙 乙丑(숙종11).
 130) 『新補受教輯錄』「刑典」用刑, 康熙 丁酉(숙종43).
 131) 『新補受教輯錄』「刑典」用刑, 雍正 甲辰(영조즉위); 雍正 壬子(영조8); 雍正 癸丑(영조9); 雍正 甲寅(영조10); 『續大典』「刑典」濫刑.
 132) 『新補受教輯錄』「刑典」贓盜, 康熙 戊寅(숙종24); 『續大典』「刑典」逃亡.
 133) 『新補受教輯錄』「刑典」贓盜, 康熙 甲戌(숙종20); 康熙 乙亥(숙종21).
 134) 『新補受教輯錄』「刑典」贓盜, 康熙 癸酉(숙종19); 康熙 乙酉(숙종31).
 135) 『受教輯錄』「刑典」推斷, 天啓 乙丑(인조3); 『新補受教輯錄』「刑典」訴冤, 康熙 甲申(숙종30); 『續大典』「刑典」推斷.
 136) 『新補受教輯錄』「刑典」推斷, 康熙 甲辰(현종5).

아와 보고하면 왕에게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였다.¹³⁷⁾ 왕의 행차가 환궁하는 길에 의금부 문 밖을 지나게 되면 친히 죄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¹³⁸⁾ 죄수의 석방 여부는 왕에게 각각 틈을 올리도록 하였다.¹³⁹⁾ 영조는 모든 범죄는 반드시 傳旨를 만들어 有司에게 내리고 獄事는 일정한 절차를 갖춘 뒤에 斬刑에 처하였다.¹⁴⁰⁾

마지막으로 全家徙邊律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全家徙邊律은 조선에서 특별히 만든 律로서 죄인의 전 가족을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연좌형벌이다.¹⁴¹⁾ 조선 전기에는 변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죄인의 가족이 활용되었으며, 17세기까지도 여전히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죄로 인식되었다. 『신보수교집록』이 반영하고 있는 영조전반기의 시대상황에서는 전가사변률은 여전히 극형 다음의 엄한 형벌로 인식되고 있어서 사면령이 내릴 경우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할 정도였다.¹⁴²⁾ 또 여전히 국가에서 취하는 강력한 형벌로서 「吏典」 ‘功臣’, 「戶典」 ‘諸田’, 「兵典」 ‘軍制’ 등에 걸쳐 고루 망라되어있다.¹⁴³⁾ 전가사변률은 연대별로는 숙종대와 영조대의 수교가 가장 많으며, 내용상으로는 「戶典」과 「刑典」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¹⁴⁴⁾ 이 중 주요한 항목 ‘量田’과 ‘漕轉’이 특히 주요하게 부각되어 國稅와 관련되는 부분의 처벌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가사변률의 시행은 국가의 통치체계를 해치는 위협요소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의미가 주요하게 부여되었다.

아울러 전가사변률 개정도 확인된다. 전가사변률의 개정은 숙종년간에만 3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다.¹⁴⁵⁾ 『수교집록』에는 1차(숙종10), 2차(숙종14) 개정내용이 실려있으나,¹⁴⁶⁾ 3차 개정은 『수교집록』 간행이후인 숙종 43년에 단행되어 실리지 못하고 『신보수교집록』에 가서야 그 사례들이 일부 수록되었다.¹⁴⁷⁾ 여기서의 죄를

137)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康熙 戊寅(숙종24).

138)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康熙 辛巳(숙종27).

139) 『新補受教輯錄』 「刑典」 殺獄, 康熙 乙酉(숙종31).

140) 『新補受教輯錄』 「刑典」 推斷, 雍正 丙午(영조2).

141) 全家律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백철, 앞의 논문(2007a), 170~175쪽.

142) 『承政院日記』, 康熙 11年 (현종13) 4月 21日(丙申); 『新補受教輯錄』 「刑典」 恤囚, 康熙 丙戌(숙종32).

143) 『新補受教輯錄』 「戶典」 諸田, 康熙 丁酉(숙종43); 『新補受教輯錄』 「吏典」 功臣, 康熙 丁酉(숙종43); 『新補受教輯錄』 「兵典」 軍制, 康熙 丁酉(숙종43).

144) <표 5> 『新補受教輯錄』 六典의 全家徙邊律 현황(※[]는 개정된 조항)

저지른 당사자가 죽을 경우 일가족을 풀어주는 조치도 확인되는데 전가사변률의 개정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⁴⁸⁾ 이후 『속대전』 찬집시에는 전가사변률 전체를 폐지하는 조치까지 취해지게 되었다.

관형주의의 표방은 이념적으로는 요순의 이상사회를 탕평정국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었지만, 실제 관형의 대상은 대개 小民이라는 점에서 소민의 생활기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들이다. 이는 소민보호를 내세웠던 탕평군주의 정치이념이 현실정치에서 구현된 사례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영조년간 법제정비사업은 조선초의 『경국대전』체제의 회복을 주요한 목표로 제

구분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연대미상	소계
吏典	功臣		1+[1]		2		3+[1]
戶典	諸田		1+[1]			2	26+[1]
	戶籍		2			1	
	量田		9			1	
	漕轉		1		1	4	
	雜令		1				
	徵債				1		
	堤堰		1		1		
禮典	諸科		1			1	
兵典	軍制		[1]				1+[1]
	徙民	1					
刑典	推斷			1	2		11
	恤囚		1				
	公賤				3	1	
	禁制				1	1	
工典	禁制					1	0
	訴冤						
소계		1	18+[3]	1	11	11	

- 145) 김백철, 앞의 논문(2007a), 170~174쪽.
- 146) 『수교집록』에 실린 전가사변률은 1차 숙종 10년에 14건, 2차 숙종 14년에 2건이 개정된 사례가 확인된다. 『肅宗實錄』 卷59, 肅宗 43年 正月 壬戌(7日); 김백철, 앞의 논문(2007a), 145쪽.
- 147) 연대기상에는 3차례 개정으로 숙종 43년 20여개의 조문이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신보수교집록』에서 개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차 숙종 43년의 3건뿐이다. 『新補受教輯錄』 「吏典」 功臣, 康熙 丁酉(숙종43); 『新補受教輯錄』 「戶典」 諸田, 康熙 丁酉(숙종43); 『新補受教輯錄』 「兵典」 軍制, 康熙 丁酉(숙종43).
- 148) 『新補受教輯錄』 「兵典」 徙民, 康熙 壬午(숙종28); 康熙 壬辰(숙종38).

시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컸으므로, 신왕대의 법제정비사업을 주요 모델로 하여 실무적인 보완작업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숙종대에는 약1세기 이상 누적된 수교들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수교집록』을 편찬하였고, 조선의 국법체계와 『수교집록』을 통합하기 위해서 『전록통고』가 제작되었다. 영조초반 이념적으로는 『경국대전』을 중시했지만 실무적으로는 현행법과 통합된 『전록통고』에 주목하여 『전록통고』의 증보사업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전록통고』를 증보하기 위해서는 숙종대와 마찬가지로 우선 누적된 수교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으며 이것이 바로 『수교집록』을 증보하는 『신보수교집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보수교집록』은 『증보전록통고』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이 짙었다. 그랬기에 정식 간행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신보수교집록』은 『증보전록통고』 내에 산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산삭한 『속대전』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반영되었다. 이는 영조대 첫번째 법제서 편찬의 결과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조초반 법제정비시의 지향점을 여실히 반영했던 자료로 생각된다.

18세기 탕평군주의 時務는 조선후기 급격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능동적인 정부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에 현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법제들을 조정하여 현실과 법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이것이 양란후 신설된 衙門의 법제서 내 明記, 관료체계의 기강 확립 등이 아울러 이루어졌다. 또한 각 분야마다 국가조직과 관료체계가 국왕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국가통치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국가통치체계의 재확립은 중앙정치무대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 변동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였다. 국가를 유지시킬 稅制의 정상화, 경제의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불만세력 내지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적극적 대처나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과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오하는 小民들을 아울러 체제 내에 편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포섭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 백성의 생계기반을 보존하는 사법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관형주의의 표방은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결론적으로 『신보수교집록』을 구성하고 있는 受教들은 영조 초반 당대인들이 직면했던 극심한 사회변동 양상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

고자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국가체계의 재확립 없이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토대없이 국가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치대상이자 稅源이었던 백성의 생활기반 보장은 국가의 기반을 건설 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여기에 국왕 영조는 이러한 절박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필수불가결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흥미롭게도 요순의 이상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수명한다거나 관형주의를 내세워 백성을 보호한다는 적절한 정치적 명분을 제시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이 탕평군주가 18세기 중앙정치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新補受教輯錄』(奎1158); 『新補受教』(奎25263); 『新補受教』(古5125).
법제처(편), 『原新補受教輯錄·詞訟類聚』. 서울: 法制處, 1964.
- 서울대 규장각(편), 『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 서울: 서울대 규장각, 1977.
- 조선총독부 중추원(편), 『조선왕조법전집2』. 서울: 경인문화사, 1969.
- 한국역사연구회(편), 『원문·역주 신보수교집록』. 서울: 청년사, 2000.
- 구덕희, 「법전으로 역사읽기: 집록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 현실』 46, 2002, 197~213쪽.
- 구덕희, 「『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해제」. 『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 서울대 규장각, 1997, 3~25쪽
- 구덕희·홍순민, 「『신보수교집록』해제」. 『원문·역주 신보수교집록』. 서울: 청년사, 2000, 7~19쪽.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2.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론』 51, 서울대 국사학과, 2005, 275-342쪽
- 김백철, 「조선후기 숙종대 『수교집록』의 편찬과 그 성격」. 『동방학지』 140, 2007a, 131~194쪽.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속대전』 위상의 재검토: 「형전」 편찬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4, 2007b, 75~126쪽.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68, 2008a, 189~236쪽.
- 김백철, 「조선후기 숙종대 국법체계와 『전록통고』의 편찬」. 『규장각』 32, 2008b, 63~108쪽.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연구: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서울대 박사논문, 2009.

심재우, 「심리록: 정조대 사형범죄 처벌과 사회통제의 변화」.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5.

연정열, 「新補愛教輯錄에 關한 一研究」. 『論文集』 24-1, 한성대학교, 2000, 65~77쪽.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서울: 일조각, 2002.

이준구, 「조선후기의 「業儒·業武」와 그 지위」. 『진단학보』 60, 1995, 33~55쪽.

정석중,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서울: 일조각, 1990.

정석중,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서울: 한길사, 1994.

조운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2009, 211~258쪽.

한상권, 「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 1994, 302~320쪽.

홍순민, 「조선후기 법전편찬의 추이와 정치운동의 변동」. 『한국문화』 21, 1998, 165~205쪽.

국문 요약

영조년간 법제정비사업은 조선초의 『경국대전』체제의 회복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현실과의 괴리는 상당히 컸으므로, 선왕대의 법제정비사업을 주요 모델로 하여 실무적인 보완작업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신보수교집록』은 영조대 첫번째 법제서 편찬의 결과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조초반 법제정비시의 지향점을 잘 반영하는 자료이다.

『신보수교집록』을 구성하고 있는 受教들은 영조 초반 당대인들이 직면했던 극심한 사회변동 양상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국가체계의 재확립 없이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토대없이 국가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치대상이자 稅源이었던 백성의 생활기반 보장은 국가의 기반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여기에 국왕 영조는 이러한 절박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필수불가결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흥미롭게도 요순의 이상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수명한다거나 관형주의를 내세워 백성을 보호한다는 적절한 정치

적 명분을 재제시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이 탕평군주가 18세기 중앙정치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투고일 : 2009. 4. 10. ● 수정일 : 2009. 6. 8. ● 게재확정일 : 2009. 6. 15.
- 주제어(keyword) : 『경국대전』(*Gyeongguk Daejeon*), 『신보수교집록』(*Shinbo Sugyo Jibrok*), 요순의 이상정치(the Yao and Sun's ideal governance), 영조(King Yeongjo), 탕평군주(Tangpyeong monarch).